|  |  |  |
| --- | --- | --- |
| **《세수증빙 관리방법》 실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4호《세수증빙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8호, 이하 ‘《방법》’))은 2013년 2월 25일 공표되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의 실시 관련 문제를 하기와 같이 공고한다.1.《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관련 증빙의 사용세무기관은 《<세무대리보관자금계좌 관리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05]181호), 《세무 대리보관 자금 계좌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7]12호)에 근거하여 세무대리보관자금 수취 시 사용하는 《세무대리보관자금 전용영수증》 및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인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현장 벌금 부과 시,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급한 벌금영수증(이하 ‘현장벌금처벌 영수증’으로 약칭함)을 사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 잠행조례》와 《차량취득세 징수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15호)에 따라 발급한 《차량취득세 납세완료증명》 및 ‘차량취득세 전용인감’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영수증》과 현장처벌벌금영수증, 《차량취득세 납세완료증명》을 세수증빙의 결산범위에 포함시키고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세무대리보관자금전용영수증》 및 현장벌금부과 영수증은 현금관리 세수계산서 증명으로 간주하고 관리한다. 수평적 온라인연결 전자납세 시스템을 통해 납세인이 세금 납부 후, 은행이 납세인에게 발급한 《전자납세 지급증빙》및 납세인이 세무기관의 온라인 계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자가 발급한 《전자납부증빙》은 세수증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의 확인을 거쳐 영수필 인감이 날인된 《전자납세 지급증빙》은행거래기록명세서와 대조하여 오류가 없는《전자납부증빙》은 납세인의 기장결산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몇 가지 세수증빙의 사용관리(1) 데이터전보문 세수증빙의 사용관리《방법》 제3조 제2관에서 가리키는 데이터전보문 세수증빙에는 세수징수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종이형태의 세수증빙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분할단)》의 사용관리구입화물의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또는 《수출화물납세완료 분할서》를 기 취득한 기업이 구입화물을 기타 수출기업에 재 판매할 경우, 물품판매기업은 납세 완료된 기존 구입화물의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제2연(联)(영수증 을) 또는 납세 완료된 기존 구입화물의 《수출화물납세 완료분할서》 제1연에 근거하여 소재지 현(구)급국가세무국에 《수출화물 납세완료분할서》 발급을 신청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 발급 시, 반드시 기존 《세수납부서(수출화물노무전용)》 제2연(영수증 을) 또는 기존 《수출화물납세완료분할서》 제1연을 먼저 회수한다. 　　  (3) 세수납세완료증명의 사용관리1) 세수납세완료증명은 표서식과 문서식의 2종류로 구분한다. 《방법》 제17조 제1관 제(1)항·제(2)항·제(3)항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정황에 따라 발급한 세수납세완료증명은 표서식이다.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수납세완료증명은 문서식으로 문서식의 세수납세 완료증명은 납세인의 기장증빙 또는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2) 《방법》 제13조 제(3)항과 제17조 제1관 제(2)항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인에게 발급한 세법 규정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인가한 세금완납 상황을 기재한 기타 증빙이라 함은 차량선박세 완납 상황을 기재한 기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서와 저축예금 이자소득세 완납 상황을 기재한 이자리스트 등 세법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인가한 세금완납 상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증빙을 의미한다. 3)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에서 말하는 ‘특정기간 납세인의 세금완납 상황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세무기관이 납세인의 연속기간의 납세 상황에 대해 납세완료증명을 총괄 발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무기관은 《방법》 제17조 제1관 제(4)항에 따라 납세완료증명을 발급할 경우, 반드시 납세인의 납세/세금환급 정보의 전면성·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각 성세무기관이 확정한다.4)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인을 위해 세수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상황을 확인한 후, 납세인을 위한 세수납세 완료증명(표서식)을 발급해야 한다.(4) 《인화세표 판매증빙》의 사용관리세무기관과 대리판매인이 인화세표를 판매할 경우 《인화세표 판매증빙》을 동시에 발급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인화세표 판매인원과 대리판매인은 세무증빙 관리인원을 대상으로 계산서대금의 결제 및 폐기 처리 시, 《인화세표 판매증빙》에 의하여 일괄 처리해야 한다.3.세수계산서대금의 결제와 폐기(1) 세무기관의 세수증빙 발급인원과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징수/ 대리판매인은 《방법》 제38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세수계산서대금의 결제 및 폐기수속 처리 시, 《세수계산서대금 결제/폐기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 또는 세금의 총괄국고납입 관련 증빙(《세수납부서(은행수취전용)》 또는 《세수납세완료증명(표서식)》)과 함께, 세수증빙 관리인원을 통해 세금결제 및 세수증빙의 결제 및 폐기를 처리해야 하며, 대조결과 착오가 없으면, 쌍방은 상호 서명날인하고 《세수증빙 결제/폐기수책》에 등기한다. 대리징수/대리판매인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징수/원천징수세액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리징수/대리판매, 원천징수/대리수취세액의 결산 및 수수료 지급관리에 사용해야 한다.(2) 여건이 되는 지역의 세무기관은 대리징수/대리판매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징수/대리판매, 원천징수/대리수취세액 전자명세리스트를 제출하고, 납세인의 명칭, 세종(稅種), 세목, 세금귀속시기, 세액, 발급된 세수계산서/ 증명의 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안내한다. 4.신규 세수증빙 양식의 사용개시 시간2014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방법》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된 신규 세수증빙의 양식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국가세무총국은 해당 부문이 1998년에 제정하여 발표한 《세수계산서/ 증명 관리방법》 세수증빙의 양식, 《전자납세 납세완료증명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2]155호)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한 세수전자계좌이체전용 납세완료증명의 양식,《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서 발급업무 진일보 완벽화에 대한 통지》(국세발[2010]63호)에 따라 제정하여 발표한 개인소득세 납세완료증명의 양식, 《<계세 납세 신고표, 계세 완납증빙> 서식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1997]177호)에 따라 제정 및 발표한 계세 납세완료증명의 양식은 동시에 폐지한다.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특별히 이를 공고한다.국가세무총국2013년 6월 24일  |  | **关于实施《税收票证管理办法》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4号《税收票证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8号，以下简称《办法》）已经于2013年2月25日公布，自2014年1月1日起施行。现就《办法》实施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关于未纳入《办法》的几种相关凭证的使用　　税务机关按照《税务代保管资金账户管理办法》（国税发〔2005〕181号）、《国家税务总局 财政部 中国人民银行关于税务代保管资金账户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7〕12号）收取税务代保管资金时使用的《税务代保管资金专用收据》及“税务代保管资金专用章”、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当场收缴罚款时使用的财政部门统一制发的罚款收据（以下简称当场处罚罚款收据）、按照《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和《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15号）开具的《车辆购置税完税证明》及“车购税征税专用章”，继续执行原有规定。　　税务机关应当将《税务代保管资金专用收据》、当场处罚罚款收据、《车辆购置税完税证明》纳入税收票证核算范围，并且参照《办法》的规定，对《税务代保管资金专用收据》及当场处罚罚款收据按照视同现金管理的税收票证进行管理。　　纳税人通过横向联网电子缴税系统缴纳税款后，银行为纳税人打印的《电子缴税付款凭证》和纳税人通过税务机关网上开票系统自行开具的《电子缴款凭证》，不属于税收票证的范畴，但是，经银行确认并加盖收讫章的《电子缴税付款凭证》、与银行对账单核对无误的《电子缴款凭证》可以作为纳税人的记账核算凭证。　　二、关于几种税收票证的使用管理（一）数据电文税收票证的使用管理《办法》第三条第二款所称数据电文税收票证，不包括存储在税收征管系统中纸质税收票证的电子信息。　　（二）《出口货物完税分割单》的使用管理　　已经取得购进货物的《税收缴款书（出口货物劳务专用）》或《出口货物完税分割单》的企业将购进货物再销售给其他出口企业时，应当由销货企业凭已完税的原购进货物的《税收缴款书（出口货物劳务专用）》第二联（收据乙）或已完税的原购进货物的《出口货物完税分割单》第一联，到所在地的县（区）级国家税务局申请开具《出口货物完税分割单》。税务机关开具《出口货物完税分割单》时，必须先收回原《税收缴款书（出口货物劳务专用）》第二联（收据乙）或原《出口货物完税分割单》第一联。　　（三）税收完税证明的使用管理　　1.税收完税证明分为表格式和文书式两种。按照《办法》第十七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以及国家税务总局明确规定的其他情形开具的税收完税证明为表格式；按照《办法》第十七条第一款第（四）项规定开具的税收完税证明为文书式，文书式税收完税证明不得作为纳税人的记账或抵扣凭证。　　2．《办法》第十三条第（三）项、第十七条第一款第（二）项所称扣缴义务人已经向纳税人开具的税法规定或国家税务总局认可的记载完税情况的其他凭证，是指记载车船税完税情况的交强险保单、记载储蓄存款利息所得税完税情况的利息清单等税法或国家税务总局认可的能够作为已完税情况证明的凭证。　　3. 《办法》第十七条第一款第（四）项所称“对纳税人特定期间完税情况出具证明”，是指税务机关为纳税人连续期间的纳税情况汇总开具完税证明的情形。税务机关按照《办法》第十七条第一款第（四）项开具完税证明时，必须确保纳税人缴、退税信息全面、准确、完整，具体开具办法由各省税务机关确定。　　4. 扣缴义务人未按规定为纳税人开具税收票证的，税务机关核实税款缴纳情况后，应当为纳税人开具税收完税证明（表格式）。　　（四）《印花税票销售凭证》的使用管理　　税务机关、代售人销售印花税票应当同时开具《印花税票销售凭证》；税务机关印花税票销售人员、代售人向税收票证管理人员办理票款结报缴销时，应当持《印花税票销售凭证》一并办理。　　三、关于税收票款的结报缴销　　（一）税务机关税收票证开具人员、扣缴义务人、代征代售人按照《办法》第三十八条第二款的规定办理税收票款结报缴销手续时，应当填制《税收票款结报缴销单》，连同所收取的税款或税款汇总缴库的相关凭证（《税收缴款书（银行经收专用）》或税收完税证明（表格式）），向税收票证管理人员办理税款的结算和税收票证的结报缴销，核对无误的，双方互相签章并登记《税收票证结报缴销手册》；代征代售人和扣缴义务人还应当报送代征、代扣税款报告表，用于对代征代售、代扣代收税款的核算及手续费的支付管理。　　（二）有条件的地区，税务机关应当积极引导代征代售人和扣缴义务人报送代征代售、代扣代收税款电子明细清单，列明纳税人名称、税种、税目、税款所属期、税额、已开具税收票证字号等。四、关于新税收票证式样的启用时间　自2014年1月1日起，各地税务机关统一启用由国家税务总局根据《办法》制发的新税收票证式样，国家税务总局根据1998年国家税务总局发布的《税收票证管理办法》制发的税收票证式样、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电子缴税完税凭证有关问题的通知》（国税发〔2002〕155号）制发的税收电子转账专用完税证式样、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做好个人所得税完税凭证开具工作的通知》（国税发〔2010〕63号）制发的个人所得税完税证明式样、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契税纳税申报表、契税完税证〉式样的通知》（国税发〔1997〕177号）制发的契税完税证式样同时废止。　　本公告自2014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6月24日 |